

### 2005년도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(안)

### 심 사 보 고 서

2005. 12.

행 정 위 원 회

#### 1. 審 査 經 過.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5년 11월 17일 구청장

나. 회부일자 : 2005년 11월 21일 회부

다. 상정일자 : 2005년 12월 5일

제115회(정례회) 제3차 행정위원회 상정의결

#### 2. 提 案 說 明 的 要 旨 (제안설명자 기획재정국장 홍성배)

##### 가. 제안이유

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제2항,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제①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결후 시행하기 위한 것임.

##### 2. 주요골자

- 장사등에관한법령의 개정으로 자치단체에 납골시설 설치의무가 부여되고 시립 납골시설의 만장으로 일반 시민의 시립납골시설 사용이 전면 제한되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층의 장례에 따른 부담을 해소하고,
- 서울시 장사시설의 소규모 분산정책과 건립비 지원 시책에 적극 부응하여 우리가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납골시설을 확보코자 충북 음성군 금왕읍 용계리 166-1호 소재 용흥추모공원(시설납골당)의 일부 지분인 개인 납골단 5,043기의 매입을 추진하여 건전한 장사문화 정착에 기여,
- 2005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 계상 재산

- 취득재산내역

(단위 : 천원)

취득재산의 표시				취득목적 (취득용도)	취득액 가     격	소유자	비고
소재지	지목	토지면적	건물면적				
충북 음성군 금왕읍 용계리 166-1	종교 용지	10,679㎡ (3,236평)	지하1지상3 1개동 3,715.64㎡ (1,125평)	구립 납골당 확보	1,512,900 (전액 시비)	최중숙	납골단 5,043기에 대한 지분인수

- 취득재산 세부현황

- . 취득시기 : 2005년 하반기 ~ 2006년 상반기
- . 위 치 : 충북 음성군 금왕읍 용계리 166-1호
- . 소 유 자 : 최 중 숙
- . 대지면적 : 10,679㎡(3,236평)
- . 건물현황

건축규모 : 지하1층/지상3층 1개동, 연면적 3,715.64㎡(1,125평)

부대시설 : 주차장, 분향소, 휴게실

. 취득예정가격 및 산출근거

예정가격 : 1,512,900천원

산출근거 : 서울시 건립비 지원기준 1기당 300천원×5,043기

- 취득방법 : 개인납골단 5,043기에 대한 토지 및 건물 지분 확보

- 취득예정가격 및 산출근거

. 취득예정가격 : 1,512,900천원

. 산 출 근 거 : 서울시 자치구 납골당 건립비 지원기준인 1위당 300천원×5,043기

- 취득시기

. 2005년 하반기 ~ 2006년 상반기

- 취득후 활용방안

. 구립 납골시설로 활용

- 근 거

. 부구청장방침 제174(2005.11.16)호 - 구립납골시설 확보 계획(변경)

- 주변여건

. 우리 구로부터 약 120km(2시간)거리인 충북 음성군에 소재한 종교단체 납골시설로서 소속리산 자락에 위치하고 있어 아늑하고 쾌적하며,

. 주변 관광지로는 월악산, 충주호 단양8경이 근접해 있어 아름다운 주변 경관과 관광명소가 즐비해 주말 나들이 코스로도 적격임.

**취득재산내역**

구분	소재지	면적	가격	비고
취득	영등포구 구립 납골시설 충북 음성군 금왕읍 용계리 166-1	지하1/지상3층 1개동 연면적 3,715.64㎡ 중 5,043기에 대한 토지 및 건물 지분 확보	1,512,900천원 (전액 시비)	일반 회계

### 3. 專門委員의 檢討報告 要旨 (專門委員 김장계)

- 종전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이 2000.1.12 장사 등에 관한 법률로 전문 개정되면서 동법 제12조에 시장·군수·구청장의 납골시설 설치 의무가 부여되었으며,
- 서울특별시에서는 서울특별시립 납골시설이 만장됨에 따라 일반시민의 시립 납골시설 사용을 전면 제한하고 있고, 2004년도에 지원된 납골시설의 건립비가 2005년도에 집행되지 않을 경우 지원된 예산의 회수는 물론 향후 지원도 축소될 우려가 있으며,
- 따라서 제안된 납골시설의 지분확보를 하게 되면, 지원된 서울시 예산을 금년중에 사용하여 우리 구민들에게 장사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으며,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을 것이며,
- 제안된 납골시설의 위치는 우리구에서 약130km지점에 위치하여 승용차 편으로 2~3시간 정도 소요되어 구민이 이용하기에는 적당할 것으로 사료되며,
- 제안된 납골시설의 권리관계를 살펴본바 토지·건물 공히 4억4천5백만원의 가압류가 설정되었습니다. 따라서, 향후 분쟁의 발생에 대비하여 계약 체결시 해지를 요청함이 타당할 것이며, 강남구의 재산취득 및 설치사례를 참고하여 유사한 조건으로 성사되도록 사업추진을 하여야 할 것이며,
- 앞으로 본 사업의 시행 시에는 유골의 안치기간, 안치기간이 경과된 유골의 처리 문제 시설의 위탁운영 및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이 조례로 규정되어야 할 것임.

### 4. 審査結果 : 原案可決